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198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6일
4.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II . 제안이유

1.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종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12.12.1)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15.10.8)함께 학교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교구성원들을 위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자료제공, 설립상담, 교육 및 컨설팅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무로서,
2.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사무명 :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2.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교육부, '18.8.13.)

○ 필요성

-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상승
- 교육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18.8.13.)
※협동조합 지원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 학교협동조합 시·도지원센터 설치 권고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수립('18.7.3.)
- 민간의 전문성 활용하여 체계적 운영 지원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지식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학교협동조합의 체계적 설립·운영 지원,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3.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 (2020.2 ~ 2022.1월)

○ 위탁비용 : 318,300천원 (2년간) ※ ('20년 예산) 158,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위탁업무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체계적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 유관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관리 및 감독 등 업무 지원
 -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이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

IV. 참고사항

1. **민간위탁 세부계획**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동의안 별첨1)
2. **관계 법령(동의안 별첨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3.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동의안 별첨3)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198호로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및 사업이해도가 높은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현황과 민간위탁 추진 개요

- 학교협동조합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를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26개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학교급별 현황

(19.10.1. 설립인가 기준)

급별	초			중		고			기타			계
	방과후	매점	계	매점	계	매점	진로	계	매점	진로	계	
개수	6	1	7	4	4	10	3	13	1	1	2	26

-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3월 1일부터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동 지원센터는 교육청이 법령 또는 조례상의 근거 없이 설치·운영하여 온 임의기구라는 점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원사업의 축소·폐지 등에 따라 그 존립과 운영이 유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해오던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동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개요]

-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21동 3층, 면적 30m²)
-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교육청(직영)
- ◆ 운영기간 : '17.3.1.~'19.12.31.(종료 예정)
- ◆ 운영인력 : 정원 2명(기간제 교육공무직)
- ◆ 예 산 : 105,447천원('19년 예산)
- ◆ 주요사무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

나. 민간위탁 동의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

1)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성에 대한 검토

- 먼저 현행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교육감의 사무 중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단순 사실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 단순 행정사무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무 등 네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교육청에서는 동 지원센터의 사무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¹⁾, 동 업무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유익하다는 것을 위탁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절차를 살펴보면 발기인 모집, 정관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공고와 개최, 설립인가 신청과 인가증 발급, 설립사무의 인계, 출납금 납입,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이 필요한 바,

이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이를 스스로 행하는 데는 일정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고,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향후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측면도 있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동 동의안의「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동의안 [별첨1])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교육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2018.8.13.)과 교육공무직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관리협의회(2019.7.3.),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2차, 2019.9.24.) 등에 따라 동 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2) 교육청의 다른 센터 운영방식과의 비교

- 그러나 교육청내 설치 운영 중인 전체 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포함하여 32개의 각종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지역교육복지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Wee센터의 3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교육청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가 다문화, 특수교육, 평생교육, 대안교육 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동 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경우 다른 센터와 비교하여 요구되는 전문성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²⁾

3) 민간위탁의 보충성에 대한 검토

- 한편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은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행정영역에 민간의 자유경쟁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바,³⁾ 행정기관이 부여된 권한과 조직을 통해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은 최소한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청의 각종 센터 운영 현황은 [붙임1] 참고.

3) 법제처 법령해석례(13-0417, 2013.10.25.)

...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이나 대행시키려면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한국법제연구원,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의 범위와 사물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07.10.31., 참고.

따라서 교육청은 그 동안 동 지원센터 사무를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을 활용하여 운영해 왔는바,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고⁴⁾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성과 재정투입 관점에서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19년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실적은 [붙임2]

[붙임1]

2019 교육청 각종 센터 운영 현황

담당부서 (담당팀)	센터명	개소	설립근거	근거분류	설치 년도	2019년예산 (단위:백만원)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공익제보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익제보지원및보호에관한 조례 제 9조	자치법규 (조례)	2015	307
감사관 (교육행정지원)	교육행정지원센터	1	○서울시교육청교육행정지원센터운영규정(훈령, 2013.10.1.)	자치법규 (훈령)	2013	42
총무과 (민원)	서울교육콜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실 운영 규정(훈령) 제6조	자치법규 (훈령)	2007	37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화부) /총무과(기록관리)	교육정보통합콜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연구정보원나이스사용자지원센터 운영계획(정보운영과-148, 2013.1.25.)	중앙부처 계획	2013	469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	지역교육복지센터	2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운영에관한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서울시교육청교육복지만관협력활성화조례제6조	자치법규 (조례)	2012	5,284
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협력)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1	-	-	2017	77
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시민협력)	서울학부모지원센터	1	○학부모지원센터운영추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0.9.17.)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학부모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자치법규 (조례)	2010	82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창의예술교육기부)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3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2015.12.31.) 제11조의2 ○교육감결재(2011.4.),(2015.12)	자치법규 (조례)	2014(1) 2018(1)	2,717
교육혁신과 (학교혁신기획운영)	학교혁신지원센터	1	○2016서울형혁신학교운영기본계획(2016.1.8.) ○교육감결재(2016.2.2)	자체계획	2016	19
교육혁신과 (과학영재정보보호교육)	과학교육센터	11	○과학·수학 정보교육진흥법제5조 ○과학교육센터정비및효율화추진계획(2017.11.21.)	법령	2003	507
교육혁신과 (과학영재정보보호교육)	발명교육센터	2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령	2002	884
과학전시관 (교육연수부)	영재교육지원센터	1	○영재교육 활성화 계획(부교육감 결재, 2003.6)	법령	2003	117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1	○방과후학교지원센터구축운영계획(2007)	자체계획	2007	65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방과후학교)	서울학습도움센터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제3항 ○교육부계획 ○자체계획	법령	2012	1,294
중등교육과 (중등인사)	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법령	2013	246
중등교육과 (교수학습·독서·외국어교육팀)	학교도서관지원센터	11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법령	2004	330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1	○평생교육법(1999. 8. 31) 제14조 및 평생교육법부칙 제4조	법령	2000	167
평생교육과	교육인생이모작	1	○교육인생2모작사업 기본계획(2016.3.30.)	자체계획	2016	1,669

담당부서 (담당팀)	센터명	개소	설립근거	근거분류	설치 년도	2019년예산 (단위:백만원)
(평생교육진흥)	지원센터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평화세계시민·다문 화교육)	다문화교육지원 센터	2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제7조	자치법규 (조례)	2013	111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교육센 터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42조	자치법규 (조례)	2012	95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생활교육)	117학교폭력신고 센터	1	○학교폭력근절대책(관계부처합동, 2012.2.6.)	중앙부처 계획	2012	42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당·대안교육)	Wee센터	17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4항, 제54조제3항제2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1조제9항및제14조 제1항 ○교육부훈령제285호(Wee프로젝트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2013	4,648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당·대안교육)	대안교육지원센 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조례 제5 조	자치법규 (조례)	2003	11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당·대안교육)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1	○학업중단학생복지지원사업(교육부, 2014.3.16.)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부청청소년지원조례제11조	자치법규 (조례)	2014	37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 터	12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법령	2007	1,943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특수교육)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1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5조 ○교육감결재(2013.8.13.) ○교육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업무협약 (2016.12.6.)	법령	2016	10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취업지원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취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018.9.28.)	자치법규 (조례)	2012	583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수련)	소규모테마형교 육여행종합지원 센터	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안전기본조례(시행2015.4.2.)제6 조(현장체험활동 안전의 특례) 제7항	자치법규 (조례)	2014	40
학교보건진흥원 (보건환경지원과)	마 음 건 강 ONE-STOP지원 센터	1	○교육기본법제27조(보건및복지의증진) ○학교보건법제2조(정의), 제7조(건강검사등)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보건법제11조(치료및예방조치등)	법령	2013	145
학교보건진흥원 (보건환경지원과)	학교흡연예방지 원센터	1	○학교보건법제9조(학생의보건관리)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기금의사용등)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설치·운영승인 : 교육감 결재(2016.2.23.)	법령	2016	810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	서울진로진학정 보센터	1	○진로교육법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법령	2005	313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수련)	안심생존수영교 육 지원센터	1	○100대국정과제54(미래교육환경조성및안전한학교구 현) ○2018.1.29. 대통령업무보고(교육부)54-4-4 상호협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초등생존수영 6학년까지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시교육협력사업·미래교육도시 서울	중앙부처 계획	2018	479

[붙임2]

2019년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실적

□ 2019년 학교협동조합 정기총회 교육

- 일 시 : 2019년 2월 12일(화) 14:00~17:00
- 장 소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큰이야기방1
- 참여 인원 : 30 여명 (학교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직원)
 - 영림중, 길음중, 가재울고, 독산고, 삼각산고, 계성고, 삼성고, 선사고, 밀알학교, 성심학교, 신천초, 한울중 및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학교협동조합전문가 2명
- 주요 교육 내용

구분	주제	내용	강사
1강 (14:00~15:30)	학교협동조합 총회운영	○ 총회 A to Z 교육 - 총회 절차 및 주요 안건, 일정별 활동 - 총회 준비 위원회 운영 및 이사회 운영 - 총회 운영과 자료집 제작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장이수
2강 (15:30~17:00)	2018년도 학교협동조합 재무제표 이해	○ 재무제표이해 - 2018년 사업평가 회계부분 이해하기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안 작성방법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차우승

□ <협동의 가치 이해> 연수 실시

- 추진 목적
 - 학교구성원의 학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 제고
 - 협동의 가치 이해 및 사회적경제 교육의 필요성 공유
 -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 운영 방법 : 농협 도농협동연수원 제휴, 전세 차량 지원
- 대상 : 초·중·고 학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추진학교
- 2기 운영 : 5/9(초·중 대상), 11/15(고교 대상, 예정)
- 연수 실적
 - 5/9(1기) 도봉초, 국사봉중 총 118명(학생 108명, 학부모 5명, 교직원 5명)
※만족도 조사 : 88.9%(매우만족 또는 만족 이상)
 - 11/15(2기, 예정) 고등학교 희망학교 대상

□ 학교협동조합 임직원 경영공시 대비 교육

- 목 적 : 학교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교육을 통한 경영공시 이해 및 올바른 경영공시 작성·등록 방법 습득
- 대 상 : 학교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 일정 및 장소
 - 일정 : 2019년 4월 30일(화) 11시~13시
 - 장소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 참여 인원 : 22명 (학교협동조합 이사장 및 임직원)
 - 영림중, 길음중, 가재울고, 구로고, 독산고, 삼각산고, 계성고, 밀알학교, 국사봉중, 가재울고, 한울중, 가재울고, 선사고 및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학교협동조합전문가 2명
- 주요 교육 내용

구분	주제	내용	강사
1강 (11:00~11:50)	경영공시란?	○ 경영공시 A to Z 교육 - 2019년 변경사항 - 경영공시란 - 경영공시절차	신나는조합 정용기
2강 (12:00~13:00)	경영공시 입력방법 및 질의응답	○ 경영공시 입력방법 - 입력 - 경영공시 자료검토 - 최종승인	신나는조합 정용기

□ 학교협동조합 임직원 워크숍 실시

- 목적
 - 서울 학교협동조합 간 사업의 추진 연계 및 서로 배움을 위한 워크숍
 - 학교협동조합별 사례를 공유하여 소통과 화합의 네트워크의 장 마련
 - 학교협동조합의 특성상 1~2년 주기로 임직원(이사장, 이사, 감사, 활동가)가 변경되고 있어서 운영에 대한 이슈와 교육이 필요함
 - 협동조합 선진지 탐방을 통한 학교협동조합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운영 개요
 - 일시 : 2019. 6. 7.(금) 14:00 ~ 6. 8.(토) 15:00 [1박 2일]
 - 장소 : 충남 홍성군 홍동면(홍동마을)
 - 대상 : 21명(서울시 소재 학교협동조합 임·직원)
 - 내용 : 협동조합 선진지 탐방 및 학교협동조합 간 소통 및 네트워크

□ 학교협동조합 포럼 운영

- 내용 : 강북권역 초·중·고 학교장 대상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포럼 실시
- 일시 : 2019. 7. 15.(월) 10:00~15:00
- 주최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
- 참석자 : 초·중·고 교장(감) 등 126명 참석

□ 2019년 사회적경제 동아리 워크숍 운영

- 내 용 : 사회적경제 강의 및 공연, 우수사례 발표, 학생참여프로그램 운영
- 일 시 : 2018. 8. 14.(수) 10:30~17:00

○참석자 : 총 14교(중 1교, 고 13교),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30여명 참석

※ 2019년 향후 연수(예정)

- <협동의 가치 이해> 2기 연수 실시 : 19. 11. 15.(금)
- 학교협동조합 포럼 운영
 - 일자 및 장소 : 19.10월말~11월초, 장소(미정)
 - 대상 : 강남권역 초중고 학교관리자 교장(감) 등 100명 이상
 - 주최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
- 학교협동조합의 날 및 운영사례 발표 : 19.12.20.(금)